

< 개정내용 >

- (①)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고용촉진·직업재활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②)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,
 -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및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징 사유로 추가하여 사후관리 강화
- (③) 법률구조법인의 법률구조사업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면 3년 연장 등
- (④)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⑤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⑥)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·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⑦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·복지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⑧)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동일사업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감면대상자에 추가
- (⑨)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非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일시적 감면 시행, 일몰 종료
- (⑩)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전·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감면 연장